

(주차장) 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分	사업개요	투 자 계 획						2001 이후	비 고
		기투자	'96	'97	'98	'99	2000		
합 계		5,027	1,997	2,054	2,111	2,168	2,225		
주 · 정 차금지 선 설 치	6km	11	11	11	12	12	13		
주 · 정 차금지 및 견인표식판 설치	2000개	50	50	52	54	56	58		
주 택 가 주 차 구획 선	40km	48	50	52	54	56	58		
주 택 가 주 차 표식판	1580개	13	8	9	10	11	11		
노상 주 차 구 회 선	6km	2	1	1	1	1	1		
노상 주 차 표식판	35조	3	5	5	6	6	7		
공영 주 차 장 전 설 시 설 비	1개소	4,900	1,872	1,924	1,974	2,026	2,077		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	18
번호	

발의 년월일 : '95. 8.23.
발의자 : 김유현의원
와 10인

○ 주문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: 9인
- 선임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
○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○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1조
- 지방재정법 제36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1. 목적 : 서울특별시 마포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2. 위원수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함.

3. 선임방법 :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.

'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

1. 조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'94서울특별시 마포구 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,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조사의 범위

'94각동에서 제작설치된 관내도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

3.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

총무재무위원회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시행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